

「2026년도 모범 장애경제인 및 유공자」 포상 후보자 모집 연장 공고

2026년도 모범 장애경제인 및 유공자 포상 후보자 모집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우수 후보자의 신청 및 추천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분야의 공적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하여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20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1 포상목적

- 장애인기업 육성·발전에 공로가 있는 모범 장애경제인 및 유공자 포상을 통하여 장애인기업의 성과 및 사회적 가치 확산

2 포상 종류 및 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7점, 지식재산처장 5점으로 총 22점

분야	훈격		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장관급)	지식재산처장 (차관급)	
① 모범 장애경제인	15	5	20
② 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	2	-	2
합계	17	5	22

○ 포상 분야 및 대상

분 야	대 상	주관기관
① 모범 장애경제인	장애경제인(장애인기업 대표자)	장애인기업종합 지원센터
② 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	장애인기업 지원 기관, 단체, 기업 등의 소속 임직원	

○ 분야별 신청자격

분야	신청자격
① 모범 장애경제인	■ 경영 혁신, 사회공헌, 고용 창출 등을 통해 국가발전 및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한 장애경제인으로 3년 이상 장애인기업을 경영한 자
② 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	■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제도 발전, 연구 등에 기여한 기관·단체·학계·기업 등의 임직원 등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현 재직기관 외 장애인기업 육성 관련 기관의 경력 합산 가능

3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6. 12.(금) ~ 8. 12.(수), 18:00까지

○ (접수방법)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전자문서 접수

분 야	접수방법	접수처
① 모범 장애경제인	전자우편(이메일)	hsy@debc.or.kr
② 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	전자우편(이메일)	
	전자문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외협력부(02-2181-6528)

4

추진일정

신청·접수	▶	요건확인 심사평가	▶	후보추천	▶	공개검증	▶	공적심사 위원회
6월~7월		8월		8월		9월		10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평가 및 후보자 추천 : 2026. 6~8월

- 분야별 포상지침에 의거하여 주관기관이 신청·접수자에 대한 요건 검토 및 서류·현장·종합 평가 등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 후보자 추천

□ 공개검증 : 2026. 9월

-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조회, 사전 공개 및 의견수렴 등 공개 검증 실시

* 결격사유 : 범죄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세금 체납 등

□ 공적심사위원회 : 2026. 10월

- 공개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수상 후보자 심사

□ 포상 수여 : 2026. 11월

- 2026년 전국장애경제인대회 행사에서 수여

- 공적기간, 재포상 금지 기간, 추천제한 기간은 포상 접수 마감일 (2026. 8. 12.)을 기준으로 산정(붙임 참조)
- 필수항목 작성·제출 누락, 증빙서류 유효기간 만료 등 정해진 양식과 기준에 맞지 않게 제출된 서류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1회에 한해 접수 담당자가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증빙서류별로 안내된 발급 기준에 맞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적격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신청 자격, 절차, 유의사항 등 공고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접수 현황 또는 계획의 변경에 따라 연장 공고할 수 있음

참고

2026년 포상 후보자 분야별 제출 서류

1 모범 장애경제인

필수 작성 서류	1	포상 신청서(서식1)	
	2	공적조서(서식2)	
	3	공적약술서-모범장애경제인 부문(서식3-1)	
	4	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4)	
	5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서식5)	
필수 증빙 서류	6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발급처 - 방문: 세무서 및 시청·동·면사무소 -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 ☎126)	
	7	장애인기업확인서(포상 수여 예정일 2026. 11. 18.까지 유효한 서류) · 발급 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1588-6072) 회원가입 →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및 자가 진단 → 정보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포상 공고일 이후 발급) · 발급처 - 국세: (방문) 국세청, 세무서, (온라인) 정부24(plus.gov.kr/, ☎110), 홈택스(www.hometax.go.kr, ☎126), - 지방세: (방문)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온라인) 정부24, 위택스(www.wetax.go.kr/, ☎110)	
	9	2024~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발급처: 국세청(홈택스 서비스 가능) 또는 세무서	
	10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co.kr, ☎1577-1000)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 · 발급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추가 증빙 서류	11	[수출실적 기재 시 필수] 2024~2025년 수출실적 증빙자료	
		직접수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실적확인서 · 발급처: 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www.bandtrass.or.kr , ☎02-2140-0740), 한국무역협회(webdocu.kita.net , ☎1566-5114)
		간접수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또는 은행(은행장 직인 포함)에서 발급 받은 수출실적확인서 · 발급처: 한국무역정보통신(www.ktnet.com , ☎1566-2119) / 각 은행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12	[지식재산권 실적 기재 시 필수] 서류에 기재한 지식재산권 사본	
		· 국내외 규격,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실용신안등록증 등 · 포상 수여 예정일(2026. 11. 18.)까지 유효한 등록증에 한하여 인정	
	13	[인증 실적 기재 시 필수] 서류에 기재한 인증서 사본	
		· ISO 경영시스템 인증, HACCP, KC, KS, K마크, Q마크(품질인증), 녹색기술, 조달우수제품지정증서,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 CLEAN 사업장, 이노비즈·메인비즈·벤처기업 확인서 등 · 포상 수여 예정일(2026. 11. 18.)까지 유효한 인증서에 한하여 인정	
	14	[장애인 고용 실적 기재 시 필수] 장애인 고용 증빙	
		· 해당 근로자의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15	[표창 이력이 있는 경우 필수] 표창장 사본	
		·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 등	
	16	기타 공적으로 기재한 사항에 대한 사실 증빙 및 참고 자료 일체	
		· 상장, 기부금 영수증, 위촉장·임명장·활동증명서, 언론보도 등의 사본 -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제외)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2 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

필수 작성 서류	1	포상 신청서(서식1)
	2	공적조서(서식2)
	3	공적약술서-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 부문(서식3-2)
	4	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4)
	5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서식5) *신청 담당자 작성 및 서명날인
필수 증빙 서류	6	재직증명서 및 (경력 합산 시)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의 경우 포상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co.kr , ☎1577-1000)
	8	현 소속 기관(단체)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 (비영리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9	[자격증 기재 시 필수] 자격증 사본(최근 5년 이내 취득 건에 한함) · 현재 업종 및 공적과 관련된 5년 이내 취득 자격증만 인정
추가 증빙 서류	10	[교육 실적 기재 시 필수] 수료증 사본(최근 5년 이내 이수 건에 한함) · 현재 업종 및 공적과 관련된 5년 이내 이수 교육만 인정 · 학위 취득(학사·석사·박사) 제외
	11	[표창 이력이 있는 경우 필수] 표창장 사본 ·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 등
	12	기타 공적으로 기재한 사항에 대한 사실 증빙 및 참고 자료 일체 · 장애인기업 육성 관련 실적 보고서, 상장·감사장, 기부금 영수증,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언론보도 등의 사본 -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제외)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1. 포상기준

◆ 부처표창의 경우, 부처의 포상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을 따름

□ 수공 기간

- (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 수여

□ 재포상 금지 * 근거 : 중소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7조(추천제한)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2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2. 포상추천 제한

◆ 중소기업부장관은 포상신청 기업(개인)의 포상추천 제한에 대한 각종 조회를 할 수 있으며, 포상신청서 제출시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심사과정 중 어느 시점에나 탈락될 수 있음

가. 일반국민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기관)

-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http://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 되는 자 또는 단체 (기관)

나. 재직 공무원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 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장을 추천할 수 있음

-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 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